

창원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6639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주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소라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백근, 손보경

변 론 종 결 2021. 7. 8.

판 결 선 고 2021. 9. 9.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가단10382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2) 기재 동산 목록을 이 법원 판결문의 별지 목록 (2) 기재 동산 목록으로 교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C과 피고 사이에 2019. 10. 30.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소재한 별지 목록 (2) 기재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소재한 별지 목록 (2) 기재 동산을 C에게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에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그 집행을 마쳤다”를 “2020. 2. 13. 그 집행을 마쳤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을 “갑 제1 내지 9, 11호증”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제2쪽 제17행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2) 기재 동산 중 일부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득관, 판사 서민아, 판사 석동우

